이 보도자료는 2023. 4. 20.(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 도 자 료

2023. 4. 20.(목)

제 목

2조3천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
-가구사 8개 법인, 임원 등 14명 공정거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 **'14. 1.~'22. 12.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담합**의 실체를 확인하고,

  - **각 가구사별로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표이사(또는 영업총괄임원)급 최고의사결정권자를 규명**하여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기소**하였음

- 본건은 **최초로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검찰은 자진신고를 받아 신속히 수사하여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음

- 한편, 본건은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양 국가기관의 **처분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정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과 공정위는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고발요청 범위 등을 **충실히 협의하여 공정거래법위반 고발 결론을 도출**하였음

-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형벌감면제도를 조화롭게 운용하여 시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을 주도한 개인의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 공정경쟁 질서를 수호할 것임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22명 - 법인 8곳, 개인 14명)

	피고인(나이)	지위	기간	처분
1	가○○(73세)	A가구사 前 대표	5년10월	4. 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	나○○(61세)	A가구사 前 특판사업부서장(전무)	3년2월	
3	다○○(54세)	A가구사 現 특판사업본부장(상무)	2년3월	
4	라○○(60세)	B가구사 前 특판사업부서장(전무)	4년	
5	마○○(50세)	B가구사 現 특판영업부서장(이사)	7년	
6	바○○(54세)	C가구사 前 대표	3년2월	
7	사○○(55세)	D가구사 現 특판사업부장(상무)	8년5월	
8	아○○(50세)	E가구사 現 대표	9년	
9	자○○(58세)	F가구사 現 대표	6년	
10	차○○(67세)	G가구사 前 대표	7년9월	
11	카○○(49세)	H가구사 現 대표	9년	
12	타○○(40세)	I가구사 現 특판영업 담당 직원(책임)	2년6월	
13	A가구사	특판가구업체	9년	
14	B가구사	상동	9년	
15	C가구사	상동	9년	
16	D가구사	상동	9년	
17	E가구사	상동	9년	
18	F가구사	상동	9년	
19	G가구사	상동	9년	
20	H가구사	상동	9년	
21	파○○(40세)	H가구사 특판가구 영업담당 직원(차장)		4. 20.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 기소
22	하○○(43세)	H가구사 특판가구 영업담당 직원(차장)		

②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14. 1. ~ '22. 12.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규모: 약 2조 3,261억 원)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투찰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건설공사에 있어 공정가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위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당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 또는 폐기하게 하여 **증거인멸·은닉교사**

※ **특판가구**(소위 '빌트인 가구') :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공동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

2 범행 구조와 수법

● 빌트인가구 입찰의 주요 과정

입찰 안내 (건설사)	⇒	현장설명회 개최 (건설사)	⇒	견적서 투찰 (가구사)	⇒	낙찰업체 선정 (건설사)
○ **(협력업체 선정)** 가구사들의 신용평가 점수, 시공능력평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입찰일정 안내)** 협력업체에 현장설명회 일시 등 안내		○ **(신축현장 설명)** 가구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축현장에 대한 가구 시공방식 등 설명 ○ **(입찰공고)** 입찰일시, 방식, 견적서 제출방식 등 공지		○ **(투찰금액 산정)** 가구사가 내부 원가율 등 고려, 적정 투찰 금액을 산정 ○ **(견적서 투찰)** 가구사 담당자들이 건설사 입찰사이트 등을 통해 견적서 제출		○ **(최저가 낙찰방식)** 통상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가구사 선정 ○ **(공사 수주)** 건설사와 낙찰업체간 신축현장에 대한 빌트인 가구 시공계약 체결

● 범행 구조도

● **범행수법 예시(압수된 메신저, 메일을 기초로 재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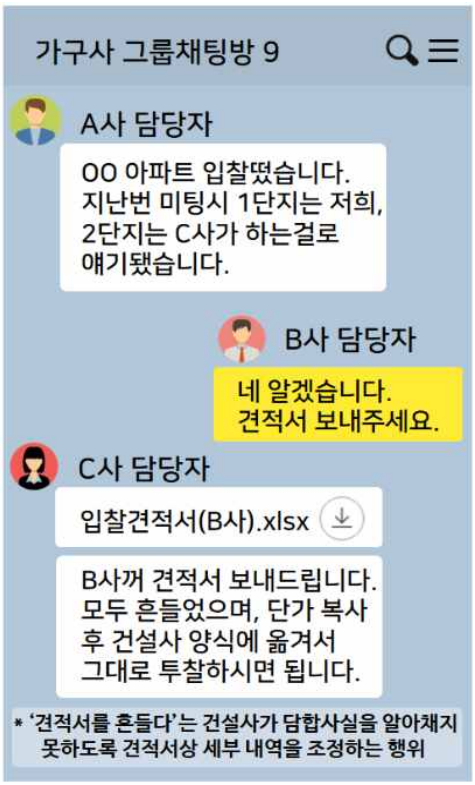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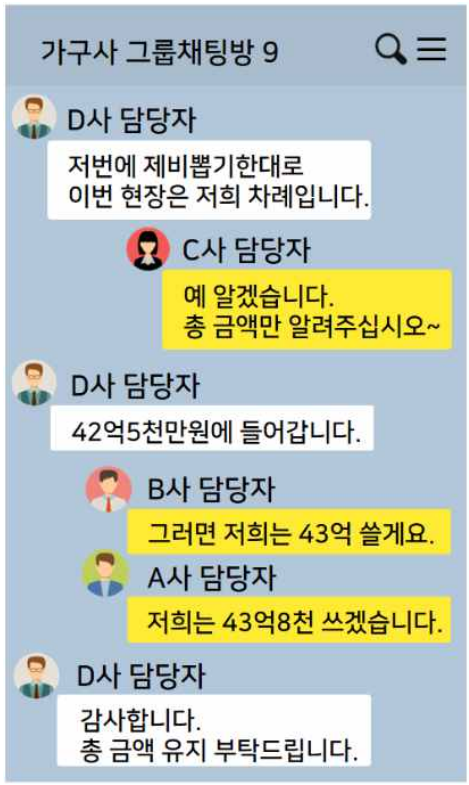

[모바일메신저로 투찰가격 및 입찰견적서를 공유]

[이메일로 들러리견적서 송부]

3 수사 경과

- '22. 5. 24. 대검, 형벌감면신청 접수
- '22. 9. 28. 대검, 당청에 사건 송부
- '23. 1. 자진신고 업체 및 건설사 관련자 등 20여명 조사
- '23. 2. 1. **관련 가구사 압수수색**
- '23. 2.~3. 가구사 관련자 등 30여명 조사
- '23. 3. 검찰-공정위 사건 관련 간담회 3회 실시
- '23. 4. 12. 공정위에 고발요청(법인 8곳, 임직원 12명)
- '23. 4. 20. **가구사 법인(8곳) 및 임직원 14명 기소**

4 수사의 의의

● 주택가격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적발

- 아파트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주(住)에 해당하는바,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가구 시장에서의 만연한 담합 범행을 명백히 밝혀 **가구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경종**

- 본건 담합의 대상인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킴**

- 본건 담합은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공정위와 긴밀한 협의, 기관간 시너지 효과 제고

- 본건은 '20. 12.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에 따른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로, 검찰의 소명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하였음

*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20. 12. 대검 예규로 시행)

- 한편, 본건 담합에 대한 신고는 검찰과 공정위에 모두 접수되어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음**

- 양 국가기관은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양 기관 처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고발요청 범위 등을 긴밀하게 소통**하였으며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였음

- 향후에도 양 기관은 **담합범죄 근절 및 이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임

● 담합의 최종책임자를 밝혀 형사법적 책임을 물음

- 담합근절에 실효성이 없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나 실무자에 대한 소극적 기소에서 탈피**하여 **담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대표이사 또는 총괄임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였음**

※ 8개 법인 중 대표이사 기소 6개 업체(그중 3개는 대주주로 소위 오너), 2개 업체는 빌트인 가구 총괄임원 기소

- 이는 담합의 효율적 억제를 위하여 **개인처벌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가장 중하다는 실체적 정의에도 부합**

- 반면, 회사 조직 체계 하에서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수동적으로 이행하거나 상급자의 지시 하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들은 불입건하였음**

● 법질서 경시 및 사법방해 사범에 대한 엄단

- 일부 가구사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담합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개시되고 소속 회사가 자진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담합을 해온 정황**이 확인되었음

- 또한, 일부 직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도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이 당국의 조사 이후에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재범하거나 조사 현장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급임에도 기소**하였음

5 향후 계획

● 담합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 현재 담합사건 수사·조사를 위하여 검찰의 형벌감면제도와 공정위의 자진신고 제도가 존재하는바, **양 제도가 조화롭게 운용되어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임

● 공정거래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 향후에도 검찰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